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34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함.
- 나.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등을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되,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함.(안 제5조)
- 라.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약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6조)
- 마. 구청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의 처리·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와 수강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50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나. 예산조치 : 총 166,928천원(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2.17.~2022. 3.10.)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정보화·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구청 내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제한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실 근

무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구청장은 정보통신실 내 전산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열람, 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격차해소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생 본인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속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시설·인력확보)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진 교육장과 강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정보격차해소교육 수강료(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교육시간	금 액	비 고
정보격차해소교육	10시간	5,000원/강좌	해당 교육시간 미만 또는 초과 강좌는 금액의 50% 범위내 에서 가·감산할 수 있음
	20시간	10,000원/강좌	
	30시간	15,000원/강좌	
	40시간	20,000원/강좌	

[별표 2]

수강료 환불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관련)	교육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육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생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제4호 관련)	교육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육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교육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 공고한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 12. (생략)

1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이용할 때 안전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 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④ (생략)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 12. (생략)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
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
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